

전주지방법원 2023. 2. 1 선고 2022가합1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4. 5. 16 선고 2023나10417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3. 2. 1 선고 2022가합141 판결

전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1. A

2. B

변론종결 2022. 12. 21.

판결선고 2023. 2. 1.

주문

1.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대 467.9㎡ 중 1/5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4. 체결된 매매계약,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같은 부동산 중 4/5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소외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. 10. 4. 접수 제150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)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바,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.

①소외 C은 2021. 12. 20.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합계 475,579,2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순번	관할	세 목	귀속	납세의무성립일	납부기한	고지세액	세납액
1	전주	양도소득세	2017년	2017. 8. 31.	2019. 12. 31.	389,476,650	468,345,550
2	전주	종합부동산세	2018년	2018. 6. 1.	2019. 1. 31.	846,970	872,370
3	전주	종합부동산세	2019년	2019. 6. 1.	2019. 12. 31.	1,3812,880	2,127,850
4	성동	종합부동산세	2017년	2017. 6. 1.	2108. 2. 20.	3,139,060	4,233,470
합 계						407,275,560	475,579,240

②C은 2019. 10. 4., 용인시 기흥구 D 대 467.9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1/5 지분은 아들인 피고 A에게, 4/5 지분은 며느리인 피고 B에게 각 매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0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)를 마쳐 주었다.

③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.

나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.

2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C의 아들과 며느리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남 현, 판사 허윤범, 판사 김민재